

2016년도 북이면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6. 7. 5.(화) ~ 7. 8.(금), 4일간
- 감사반 : 감사담당 외 4명
- 감사대상 : 2013. 9. 28. ~ 2016. 7월 현재

2 감사결과

구 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건/천원)				비 고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24	9	15	32/861	12/679	20/182	-	
원 처 분	14	7	7	32/861	12/679	20/182	-	훈계 2 주의 1
현지처분	10	2	8	-	-	-	-	

※ 회수 :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업무 소홀, 경로당 개보수공사 등 계약업무 부적정

※ 추징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및 지연신청 과태료 부과 부적정, 면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계약 및 운영 부적정

3 지적사항

원 처 분

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시정)

- 2013년 ~ 2016년 관용차량 수리 공공운영비 집행 등에 대한 지출결의서에 경리관(재무관) 또는 지출원의 날인없이 지출 : 6건, 2,347천원

- 2016. 1월 ~ 2월 ●◎◇ 지원사업에 따른 목욕 및 이·미용비 지급시 ●◎공중목욕장 수탁자의 청구 대신 개인명의(◇◆□) 청구 및 지출 : 2건, 5,685천원
 - ☞ 위탁계약 체결(2014. 10. 7.) : ●◎☆ ●◎★◇◆□■(대장 ◇◆□)
- 2015. 2/4분기 ~ 4/4분기 ☆★○●◎ 활동지원비(야식비) 청구서 기록물 미등록 및 연말에 집중지출 : 3건/1,080천원
 - 2015. 2 ~ 3분기 활동지원비(2건/720천원) ⇒ 지출일 : 2015. 12. 11.
 - 2015. 4분기 활동지원비(1건/360천원) ⇒ 지출일 : 2015. 12. 18.
- 신문 구독부수 부적정
 - 2013. 12. ~ 2015. 3.까지 ●◎신문 외 19개사에 대해 매분기 1부씩 구독료를 지급하고 ★◇◆□신문은 4부씩 지급

2.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 부적정(시정)

- 총 11개 계좌 중 법인카드 결제계좌 등 5개 계좌는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 이체계좌 등 6개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잔액 539,142원)

3.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시정)

- 2014. 7. ~ 12.월 ●◎★◇◎◆□ 협의회 회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4건, 120천원
- 2015년 ●◎◇◆□■ 정비를 위한 화분 구입비 및 2015. ~ 2016년 ●◎◇◆ 추진 노고 격려 중식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4건, 455천원
- 2013년 청렴교육 유치활동 지역특산품 홍보용 구입 예산집행품의금액 초과집행 및 집행대상 누락 : 2건, 711천원(초과액 75천원)
 - 예산집행품의 금액 : 318천원 ⇒ 집행금액 : 360천원
 - 예산집행품의 금액 : 318천원 ⇒ 집행금액 : 351천원
- 2014년 지역특산품 홍보용 농산물 구입 집행대상 미기재 : 1건, 360천원

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업무 소홀(시정)

-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 7건 보험료 미정산 : 316,020원

5. 주민숙원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2015년 북이면 ◇◆□ ●◎(폐가) 폐기물처리용역 등 2건에 대하여 사유재산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집행 : 4,500천원

6. 경로당 개보수공사 등 계약업무 부적정(시정)

- 2014년 주민숙원사업(●◎, ◇◆, □■)에 대하여 당초 공사계약기간을 초과(7일)하여 준공처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음 : 43,060원
- 2014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9건에 대하여 착공계·준공계, 준공검사조사 미작성 및 미등록
 - ↳ 당초계약대로 공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계약의 이행여부 확인 불가
- 2014년 북이면 ●◎◇ ◆□목욕장 보수공사에 대한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 243,170원

7.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미흡(주의)

- 2013년 ~ 2014년 농지원부 일제정리계획 미수립하고 시스템 정비 등 미흡

8.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3천만원미만) 추진 부적정(주의)

- 2013년 ~ 2015년까지 3천만원 미만 사업 19건(174명)에 대하여 관리책임자 미지정, 사후관리 점검업무 일부 부적정

9.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 지급 소홀(주의)

- 신규 지급대상자(연령도래, 전입) 이용권 착오지급 : 115명, 634매
 - 연령도래자 소급지급 : 89명, 492매
 - 전입자 지연지급 : 14명, 102매
 - 전입자 미지급 및 착오지급 : 12명, 40매

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 쓰레기봉투 지급 소홀(주의)

- 2014년 ~ 2016년 현재까지 장기입원(미거주)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지급 : 5명, 259매

11.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추진 소홀(주의)

- 재판정 기한 도래자 및 초과자 행정절차 미이행 : 2명

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및 자연신청 과태료 부과 부적정(시정)

- 재발급 수수료 미부과 : 17건, 85천원
- 자연신청 과태료 과소부과 : 1건, 4천원

13. 징수결의서 등 공문서 관리 소홀(주의)

- 2013년 ~ 2016년 7월까지 징수관 결재(날인) 대신 서명하거나 날인없이 인증기 수입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
 - 인증기 수입 부과·징수 : 690건, 23,157천원
 -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15건, 449천원

14. 면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계약 및 운영 부적정(시정)

- 2016년 용역계약 체결시 지역개발공채 미청구 : 50천원
- 2014년 ~ 2015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 등 계약관련 서류와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등 지출관련 서류 미징구
- 청사 출입 무인경비시스템 지문인식 위한 공무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일부 미동의
- 용역수행 및 종료단계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미징구

현 지 처 분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한 연장안내 소홀(시정)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존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존치기간 만료일, 연장 가능여부 등 내용 미고지 : 41건
- 가설건축물 지방세(취득세, 면허등록세) 미부과 : 18건

2. 북이면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시정)

-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된 건축물 외에 불법증축행위 : 본관 사무실, 50m²

3. 개발행위허가 불법행위 단속 점검 소홀(주의)

- 2014년 북이면 ●◎◇ 단독주택 신축부지 조성(995m²)에 대한 지도단속 소홀
 - 불법행위내용 : 화단조성(813m²)

4.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주의)

- 2015년 ~ 2016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개최시 이해당사자인 해당위원이 참석하여 심의
 - 2015년 저온저장고 신청 : 2명
 - 2016년 다목적소형농기계 신청 : 1명

5.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추진 미흡(주의)

- 2014년 ~ 2016년까지 북이면 ●◎◇ ◆□■△▲ ▼☆★ 외 48명에게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신청시 추가자료 제출여부(원천징수영수증 등 미첨부) 및 매분기별 거주사항, 영농규모 등 재확인 없이 38,567천원 지급함.

6. 의사무능력자(미약자) 급여관리 소홀(주의)

- 의사무능력자(미약자)에 대한 반기별 급여관리 점검시 점검서류 미확인 및 2015년 점검표 미작성 : 2명
 - 점검내용 : 증빙자료 미비, 현금과다 인출 및 사용내역 불명확

7.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주의)

- 2013년 ~ 2014년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용자료 관할이장 미송부 및 관계공무원 미확인 : 181건
 - 2013년 60건, 2014년 121건

8. 인종기용증지 수수료 세외수입 납입 소홀(주의)

- 2014년 ~ 2016년까지 지연 납입 : 46건, 1,454,700원

9. 인감 이송기간 미준수(주의)

- 2013. 9. ~ 2016. 7월까지 인감 이송기간 3일 이상 경과 : 137건
 - ※ 이송요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공부와 함께 신증명청에 이송

10. 민방위대 편성에 따른 사실확인 및 대원명부 통지 소홀(주의)

- 2014 ~ 2015년 지역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사실조사 미실시, 대원명부 미송부, 신규편성대상자에게 소속 및 임무 등 미통지

2016년도 북이면 종합감사 목록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계		24건	9	15	32/861	12/679	20/182	
1	원 처 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2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 부적정	○					
3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4/120	4/120		
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업무 소홀	○		7/316	7/316		
5		주민숙원사업 추진 부적정		○				훈계 2
6		경로당 개보수공사 등 계약업무 부적정	○		2/286	1/243	1/43	
7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미흡		○				
8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3천만원 미만) 추진 부적정		○				
9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 지급 소홀		○				
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 쓰레기봉투 지급 소홀		○				
11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추진 소홀		○				
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및 지연신청 과태료 부과 부적정	○		18/89		18/89	
13		징수결의서 등 공문서관리 소홀		○				주의 1
14		면정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계약 및 운영부적정	○		1/50		1/50	
1	현 지 처 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한 연장안내 소홀	○					
2		북이면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					
3		개발행위허가 불법행위 단속 점검 소홀		○				
4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				
5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업무 추진 미흡		○				
6		의사무능력자(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				
7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				
8		인증기용증지 수수료 세외수입 납입 소홀		○				
9		인감 이송기간 미준수		○				
10		민방위대 편성에 따른 사실확인 및 대원명부 통지 소홀		○				

처 분 지 시 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이면	2016	시 정			

제목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및 장성군재무 회계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북이면에서는 2013. 9. 6. 관용차량 수리 공공운영비 집행 등 6건 2,347천원을 【표1】 과 같이 지출결의서에 경리관(재무관) 또는 지출원의 날인 없이 지출하였다.

【표1】 경리관(재무관) 또는 지출원의 날인없이 지출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적 요	금액	부당사항
계	6 건	2,347,070	
2013. 9. 6.	관용차량 수리(공공운영비)	260,000	경리관 및 지출원 날인누락
2013. 9. 6.	2013 재산세 고지서 발송(공공운영비)	807,270	"
2013.12.20.	관용차량 유류 구입(공공운영비)	60,000	담당자 담당 지출원 날인누락
2014. 7.23.	자료 정리 위한 사무용품 구입	98,000	분임경리관 및 지출원 날인누락
2015.12.11.	발농업직불제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	131,800	재무관 날인 누락
2016. 5.31.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990,000	- 취급자, 지출원 날인 누락 - 도급자 승낙사항 날인 누락

- 또한, ◆□■ 지원사업에 따른 목욕 및 이·미용비 지급에 있어 △▲공중 목욕장은 지난 2014. 10. 7. 북이면 ●◎★◆◆□■(대장 ◆◆□)과 위탁계약 체결하였음에도 2016. 1. 1.부터 2. 29.까지 목욕비 청구서에는 ‘청구인은 ◆◆□’, ‘입금계좌는 지역농협 000-0000-0000-00(예금주 ◆◆□)’으로 매월 청구함에 따라 면장 결재를 득한 후 1월분 1,785천원과 2월분 4,080천원을 지출하였다.
- 2015. 12. 11. 2015. 2/4분기 ☆★○●◎ 활동지원비로 360천원, 같은 날 3/4분기 활동지원비 360천원, 2015.12.18. 4/4분기 활동지원비 360천원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사단법인)◆◆□■●◎★△에서 청구한 위 야식비 3건에 대한 공문은 2015. 11월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도 기록물을 접수등록하지 않았고, 연말에 집중 지출하였다.
- 2013. 12. 26.부터 2015. 3. 26.까지 ●◎신문 외 19개사에 대해 매분기별 1부씩 신문을 구독하고 구독료로 주간지는 12천원, 일간지 30천원을 집행하고 ◆◆□■신문 1개사에 대하여는 4부씩 60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지시]

- ① △▲공중목욕장은 기 사용중인 개인명의로의 계좌에 대하여 해지처리하고 수탁자인 북이면●◎★◆◆□■ 명의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이체관리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앞으로는 세출예산 집행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법령 및 자치 법규 등 업무연찬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이면	2016	시 정			

제목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장성군재무회계 규칙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되며, 공공성이 있는 현금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계좌이다.
- 또한, 같은 규칙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의 제5항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자치단체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그런데도 북이면에서는 ●◎은행에 법인카드결제 1계좌, ●◎◇☆★협동조합에 7개 계좌, ◆□■△협동조합에는 3개 계좌를 개설하였다.
- 따라서 ●◎◇☆★ 000-0000-0000-00(잔액 536,626원), 000000-00-000000(잔액 0원), 000000-00-000000(잔액 580원), 000000-00-000000(잔액 115원)등 4개 계좌와 ◆□■△협동조합 000-000-000000(잔액 1,703원), 000-000-000000(잔액 118원) 2개 계좌를 임의개설한 사실이 있다.

[처분지시]

별도 개설하여 관리중인 ●◎◇☆★◆□ 수납이체계좌 등 6개 계좌에 대하여 해지처리 및 잔액 세외수입 세입조치(539,142원)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이면	2016	시 정	회 수	120,000	

제목 :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위법·부당 내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3호)』에 따르면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북이면에서는 【표1】 과 같이 규정과 다르게 관리한 사실이 있다.

【표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적 요	금액	부당사항
계	11 건	1,646,000	
2014. 7.14.	●○◇◆□■△ 협의회 회비 납부	30,000	법령 및 조례 근거없이 집행
2014. 9.29.	"	30,000	"
2014.11.25.	"	30,000	"
2014.12.29.	"	30,000	"
2015.12.14.	●○◇◆ □■ 장비를 위한 화분 구입	200,000	예산편성목 부적정
2015.12.24.	△▲▽▼ 추진 노고 격려 중식비	91,000	예산편성목 부적정
2016. 2. 3.	"	42,000	"
2016. 2. 5.	"	122,000	"
2013. 9.13.	●○◇◆ 유치활동 지역특산물 홍보용 구입 - 예산집행품의 금액 : 318,000원	360,000	- 집행품의금액 초과 집행 - 집행대상 누락
2013. 9.13.	●○◇◆ 유치활동 지역특산물 홍보용 구입 - 예산집행품의 금액 : 318,000원	351,000	- 집행품의금액 초과 집행 - 집행대상 누락
2014. 9.04.	□■△▲▽ 홍보용 농산물 구입	360,000	- 집행대상 미기재

[처분지시]

법령 및 조례 근거없이 집행한 ●◎◇협의회 회비 120,00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집행시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이면	2016	시 정	회 수	316,020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업무 소홀

[현 황]

사업명	계약 일자	계약 금액 (천원)	계약자	산정내역(원)			준공계 접수일	보험 가입 신고일
				산정액	납부액	납부여부		
2015년도 ●○◇◆□■ 주택개조사업	2015. 9.15.	3,800	주●○◇◆□■	53,492	-	부	2015. 10.4	2015. 9.22.
●○◇◆□ ■△주거환경 개선사업	2015. 5.26.	3,000	주●○◇◆□■	41,681	-	부	-	2015. 6.4.
주민숙원사업 (●○◇◆□■)	2015. 4.30.	6,151	●○◇◆□	72,377	-	부	2014. 4.21.	-
●○경로당 개보수사업	2014. 11.24	3,500	주●○◇◆□■	33,646	-	부	2014. 12.11	2014. 12.11
●○경로당 개보수사업	2014. 11.14.	2,000	주●○◇◆□■	21,582	-	부	2014. 12.11.	2014. 12.11
●○경로당 개보수사업	2014. 11.14.	5,000	주●○◇◆□■	52,182	-	부	2014. 12.11.	2014. 12.11.
●○◇경로당 개보수사업	2014. 11.14	3,000	주●○◇◆□■	41,066	-	부	2014. 12.11.	2014. 12.11.

[위법·부당 내역]

- 북이면에서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에 대하여 각각 2014. 11. 24.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건설공사 경비분석 및 비목별 효율을 정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 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 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이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규정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나, 동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납부 할 수 있다.
- 그러나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일로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날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한편,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면 잔액부분은 회수할 수 없으나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 그러나 북이면에서는 준공일 이후 보험가입 및 사업개시 신고서 및 별도정산조치 하지않은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 7건”에 대한 산재 및 고용보험료 316,02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지시]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 7건”에 대한 산재 및 고용보험료 316,020원을 회수 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5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이면	2016	주 의			훈 계

제목 : 주민숙원사업 추진 부적정

[현 황]

(단위:천원)

공 사 명	위 치	소 유 현 황		예산과목	사업비 (천원)	업체명	지급일자
		토지	건물				
●○◇ ◆□■△회관 창고철거 장비임차계약	북이면 ●○리 00-0	● ○ 리 ◇ ◆ □■△▲	● ○ 리 ◇ ◆ □■△▲	시설비 및부대비 (401-03)	500	◆□■△	'15.12.18.
북이면 ●○◇ ◆□(폐가) 폐기물처리용역	북이면 ●○리 산 00-0	● ○ ◇	● ○ ◇	시설비 및부대비 (401-01)	4,000	(유)●◆ □○●	'15.10.14.

[위법·부당 내역]

- 북이면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회관 창고 철거공사” 및 “북이면 ●○◇ ◆□(폐가)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1장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중 제6호(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지방재정법령, 지방계약법령 등 입법 취지를 근거로 예산집행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면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편익차원을 위한다는 사유로 불요불급하게 예산집행을 한 사실이 있다.

[처분지시]

앞으로는 세출예산 집행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업무연찬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6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이면	2016	시 정	회수/추징	286,230	

제목 : 경로당 개보수공사 등 계약업무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북이면에서는 2014. 3. 24. ●◎◇◆□ 대표 ■△▲과 『주민숙원사업(●◎, ◇◆, □■)』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4. 4. 21.에 준공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등)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고 있고,”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지체상금) 제1항의 규정 의거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북이면에서는 “주민숙원사업(●◎, ◇◆, □■)”에 대하여 당초 공사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준공처리하였음에도 【표1】 과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 및 징수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북이면에서는 각종 공사계약 업무처리과정에서 『계약체결 → 착공계 접수/등록 → 준공계 접수/등록 → 준공검사 → 대금청구 → 대금지급』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17조(검사)의 규정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그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9건에 대하여 【표2】 과 같이 착공계·준공계 및 준공검사조서 미작성 및 미등록 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또한 【표3】 과 같이 “북이면 ●◎◇ ◆□목욕장 보수공사”의 공사원가 계산서상에 “퇴직공제부금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2014년도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총공사금액(도급액+관급액)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일 경우 반영 되어야 하고, “퇴직공제부금비의 경우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인 경우 반영되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 또는 감액조치 없이 준공 처리하였다.

【표1】 지체상금 부과액

번호	사업명	계약금액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징수금액
1	주민숙원사업 (●◎◇◆□■)	6,151,300원	0.1%	7일	43,060원

※ 계산식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표2】 착공계·준공계 및 준공검사조서 미작성 및 미등록 등 현황

번호	사업명	계약자	공사기간	착공계 접수일	준공검사 조서여부	비 고
1	●◎◇ 수로 덮개 제작 설치	(주)●◆□●	-	-	-	
2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	●◆□●●	-	-	-	
3	생활민원처리사업 (△▲▽외1개소)	●◆□●●	2014.12.2. ~ 2014.12.15.	2014.12.2.	여	
4	▼☆★ ●◎마을 지주간판 철거	(주)●◆□●	-	-	-	
5	노후화된 ◇◆컴터 수선(도색)공사 시행	(주)●◆□●	-	-	-	

6	주민숙원사업(●◎ ◇◆-배수로정비)	●◆□●●	-	-	-	
7	□■● ●◎◇◆ 국기계양대 대수선공사	●◆□●●	2015.11.6. ~ 2015.12.5	-	여	
8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외3개소)	●◆□●●	2014.11.10. ~ 2014.12.15.	2014.11.10	여	준공계 미등록
9	●◎,◇◆,□△▲▽,▼ ●,◆□,●●,☆★,●● 경로당 개보수사업	(주)●◎◇◆□■	2014.11.24. ~ 2014.12.12.	2014.11.28.	부	

【표3】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번호	사업명	계약금액	감액사항		비고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	북이면 ●◎◇ ◆□목욕장 보수공사	9,055,000	25,474원	217,701원	

[처분지시]

“주민숙원사업(●◎, ◇◆, □■)”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하지 않은 43,060원과 “북이면 ●◎◇ ◆□목욕장 보수공사”에 대한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3,170원을 추징·회수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7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이면	2016	주 의			

제목 :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미흡

[위법·부당 내역]

- 북이면에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 농지원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1)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읍면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원부를 일제정비 하여야 하며 농지소유권 변동 등의 사항을 정비하도록 규정하였다.
- 그런데도 북이면에서는 2013~2014년도에 농지원부 일제정리 계획을 미수립하고 시스템 정비 등을 미흡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 농지경작구분별 현황(2016. 5월 현재) - 농업행정시스템

(단위 : 건)

한세대 농지원부 2개이상 농가	중복농가주, 농가구성원	경작면적 1,000미만농가	임차기간 종료농가	미등록 농가구성원
30	2	84	193	74

[처분지시]

앞으로는 농지원부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3항 :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처 분 지 시 서

NO. 8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이면	2016	주 의			

제목 :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3천만원 미만)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북이면에서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종사자 등의 소득증대 및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르면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 등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 대장에 대한 점검·보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그런데도 북이면에서는 2013~2015년도에 북이면 ●◎◇ ◆■ ◆□■ 외 174명에게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19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책임자 지정 및 사후관리 점검 업무를 일부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3천만원 미만) 현황(2013~2015)

(단위 : 개, 동, 톨, 식)

지원 연도	사 업 명	대상자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2013	다목적소형농기계	●◆■외15	16	39,440	19,720	19,720	장비
2013	다목적소형하우스	●◆■외7	8	21,300	10,650	10,650	시설
2013	원예특화지원	●◆■외12	13	117,740	59,320	59,320	시설, 기타
2013	저온저장고지원	●◆■외13	14	111,320	55,660	55,660	시설
2013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 ○●◎◇	1	17,280	5,184	1,728	장비

지원 연도	사 업 명	대상자	사업량	사업비(천 원)			비고
				계	보조	자담	
2013	친환경농자재 (논두렁제초기등)	●◆■외5	6	23,900	10,590	13,310	장비
2014	다목적소형농기계	●◆■외22	23	50,290	25,146	24,180	장비
2014	다목적소형농하우스	●◆■외2	3	6,100	3,050	3,050	시설
2014	신규과원조성사업	●◆■외7	8	32,300	16,150	16,150	시설
2014	저온저장고지원	●◆■외13	14	110,000	49,993	60,007	시설
2015	관수관비시설지원	●◆■	1	3,407	1,735	1,735	시설
2015	관정지원사업	●◆■외 2	3	12,600	6,300	6,300	시설
2015	다목적소형농기계	●◆■외27	28	49,370	24,685	24,685	장비
2015	다목적소형하우스	●◆■외 5	6	15,800	7,900	7,900	시설
2015	시설채소지원사업	●◆■외 1	2	15,816	7,908	7,908	시설
2015	신규과원조성사업	●◆■외 7	8	43,804	21,902	21,902	시설
2015	저온저장고지원	●◆■외17	18	147,000	72,600	74,400	시설
2015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	1	13,200	12,000	1,200	장비
2015	친환경농기계	●◆■	1	3,500	2,450	1,050	장비

[처분지시]

앞으로는 3천만원 미만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9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이면	2016	주 의			

제목 :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 지급 소홀

[위법·부당 내역]

- 북이면에서는 의료복지혜택이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노후생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있다.
-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제4조에 따르면 지원기준으로 65세 나이에 이르는 다음달부터 지급하고, 전입자가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달부터 지급하며,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의 지원사유 발생일과 이용권 지급 시기가 맞지 않아 이용권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북이면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용권 지급대상 연령 미도래자 89명에게 연령도래 1개월~3개월 전에 소급하여 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였고, 전입자 14명에 대하여는 전입월 다음달로부터 1개월~3개월 소급 지급하였으며, 특히 2014년도에는 전입자 7명에 대하여 1~2개월분 이용권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연령도래자 5명에게 이용권을 착오지급하였음.
-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 소급 및 지연 지급 현황 (단위 : 명, 매)

구 분	연도별	인원	수량	비 고
연령도래	소계	89	492	
	2014	48	198	1월~3월 소급
	2015	41	294	1월~3월 소급
전 입	소계	14	102	
	2014	13	96	1월~3월 지연
	2015	1	6	

○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 미지급 및 착오지급 현황

(단위 : 명, 매)

연도별	인원	수량	비 고
계	12	40	
2014	5	10	착오지급
	7	30	미지급

[처분지시]

앞으로는 목욕비 및 이·미용권 지급시 관련규정에 따른 지급시기 및 대상을 명확히 준수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10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이면	2016	주 의			

제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 쓰레기봉투 지급 소홀

[위법·부당 내역]

-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8조에 의거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1인당 매월 60리터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 이에 쓰레기봉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거주 수급자에게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 북이면에서는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기입원(미거주) 수급자 5명에게 쓰레기봉투 259매를 지급하는 등 쓰레기봉투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장기입원(미거주) 수급자 무료 쓰레기봉투 지급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원기간	봉투지급기간	지급수량
1	●◎◇	○○.○○.○○	2015.7~2015.12	2015.7~2015.12	18매
2	◆□■	○○.○○.○○	2014.1~2016.6	2014.1~2016.6	98매
3	●◎◇	○○.○○.○○	2014.1~2016.6	2014.1~2016.6	98매
4	◆□■	○○.○○.○○	2016.1~2016.6	2016.1~2016.6	18매
5	●◎◇	○○.○○.○○	2015.7~2016.6	2015.7~2016.6	27매

[처분지시]

앞으로는 쓰레기봉투 지급시 관련규정에 따른 대상자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1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이면	2016	주 의			

제목 :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추진 소홀

[위법·부당 내역]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하의 기준을 정하여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문을 통보하고, 지정된 기한 내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시 1개월 이내 재판정 촉구 공문을 통지, 촉구 기한 내에도 관련서류 미제출시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 발송(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청취),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의견제출 기한 종료일 다음날 장애인등록을 취소, 해당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여 2주간의 기한내 장애인 등록증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북이면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재진단 기한일을 넘겨서 안내하였으며, 지정된 기한내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인 2명에게 재판정 촉구 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장애인등록 취소 등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음.

○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현황

연번	성 명	주 소	장애 유형	등급	장애 진단일	재진단 기 한	재진단일	재판정 통보서 송부일	비고
1	△▲▽	●◎◇ 000-00	◆□	○급	2003.10.08	2014.01.09	2014.07.16	2014.01.21	기일초과 통보 및 행정절차 미이행
2	☆★○	◆□■ 00-0	■△	○급	2001.02.14	2014.05.21	2015.04.02	2014.05.02	행정절차 미이행

[처분지시]

앞으로는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추진시 관련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명확히 준수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1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이면	2016	시 정	추 징	89,000	주 의 (병합)

제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및 지연신청 과태료 부과 부적정

[현 황]

【표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 현황

연번	신청일자	신청인	발급사유	부적정 내용	비 고
계		17건			85,000원 미부과
1	'13.10.10	●◎◇	혜 손	수수료미부과	5,000원 미부과
2	'13.10.11	◆□■	"	"	"
3	'13.10.21	△▲▽	"	"	"
4	'13.10.28	▼☆★	"	"	"
5	'13.12.06	◎◆□	"	"	"
6	'13.12.10	◀●▶	"	"	"
7	'13.12.17	●◎◇	"	"	"
8	'14.02.14	◆□■	"	"	"
9	'14.03.24	△▲▽	사진변경	"	"
10	'14.03.27	▼☆★	분 실	"	"
11	'14.04.24	◎◆□	사진변경	"	"
12	'14.04.29	◀●▶	"	"	"
13	'14.06.05	●◎◇	용모변경	"	"
14	'14.09.12	◆□■	분 실	"	"
15	'14.09.15	△▲▽	혜 손	"	"
16	'14.11.07	▼☆★	"	"	"
17	'15.02.24	◎◆□	"	"	"

【표 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부적정 현황

지연신청내역			부과내역		정 당 부과액	비 고	
의무자		신청기간	접수일	과태료			감경후 과태료
성명	주소						
●◎◇ ◆□■ 00	북이면	'14.09.01 ~ '15.08.31	'15.12.11 (6개월미만)	30,000	8,000 (일제조사 50%, 자진납부 20%)	12,000	4,000원 착오 미부과

[위법·부당 내역]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7조제2항, 제18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경우(사진이나 글씨 등이 닳아 없어짐 등), 보안미적용('06.11. 1.이전 발급증),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 등 주소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는 경우,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해발생, 관계법령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 의무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수수료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북이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3. 10월부터 2015. 2월중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상자 중 발급 사유가 훼손, 사진변경, 용모변경, 분실인 자에 대하여 수수료 17건 미부과하여 총 85,000원 과소부과 처리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지연 과태료 부과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 이에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²⁾』에 따르면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면에서는 【표 2】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4,000원 과소부과 처리하여 주민등록 업무처리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분지시]

미부과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85,000원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지연 과태료 4,000원을 추징하고,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업무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경감기간 : 2015. 11. 02. ~ 2015. 12. 18.(47일간)

처 분 지 시 서

NO. 1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이면	2016	주 의			주 의

제목 : 징수결의서 등 공문서 관리 소홀

[위법·부당 내역]

- 『지방재정법』 제6장(수입), 『장성군재무회계규칙』 제4장(수입) 및 제7장(계산증명)에 따르면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 징수부에 기재하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북이면에서는 【표 1, 2】 와 같이 2013. 9월 ~ 2016. 7월 현재까지 징수관의 결재(날인) 대신 서명하거나 날인없이 인증기 수입과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등 공문서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1】 인증기 수입 부과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년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인증기 수입	690	23,157	68	2,095	246	8,013	250	8,890	126	4,159

【표2】 과태료 부과 현황

연도별	부과일	대 상 자		부과액 (원)	부과사유	수납일
		주 소	성 명			
계			15건	449,000		
2014	03-11	북이면 ●◎◇ 00	■○▲	25,000	주민등록 재등록 지연과태료	03-11
	06-09	북이면 ◆□■ 00-0	◎◇◆	40,000	주민등록 신규발급 지연 과태료	06-09
2015	02-17	북이면 △▲▽ 00-0	■○▲	24,000	주민등록 지연과태료	02-17
	20-17	북이면 ▼☆☆ 00	◎◇◆	16,000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지연 과태료	02-23
	05-18	북이면 ◁▷ 000	■○▲	16,000	주민등록재등록 지연과태료	05-18
	07-01	북이면 ▶◎◆ 00-0	◎◇◆	40,000	"	07-01
	10-14	북이면 ●◎◇◆□ 00	■○▲	56,000	"	10-23
	10-20	북이면 ■△▲ 000-00	◎◇◆	32,000	가족관계등록신고지연 과태료	10-20
	11-19	북이면 ▼☆☆ 00-0	■○▲	8,000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지연과태료	11-19
	12-11	북이면 ◁▷ 00	◎◇◆	8,000	"	12-17
2016	01-27	◎◇도 ◁▷ ●◎◇ ◆ 000	■○▲	16,000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연 과태료	01-28
	02-03	북이면 △▲▽ 00-0	◎◇◆	40,000	"	02-03
	02-16	북이면 ◁▷ 000	■○▲	40,000	주민등록재등록 지연과태료	02-16
	03-25	◎◇군 ◁▷ ●◎◇ 000-0	◎◇◆	8,000	가족관계등록신고지연 과태료	03-25
	06-01	북이면 ▶◎◆ 00-0	■○▲	80,000	주민등록재등록 지연과태료	미수납

[처분지시]

앞으로는 세외수입징수결의 등 회계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1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이면	2016	시 정	추 징	50,000	

제목 : 면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계약 및 운영 부적정

[현 황]

- 북이면은 청사 안전관리와 보안관리를 위해 경비업 및 전기통신사업 등으로 등록된 업체와 1년간 청사경비용역을 체결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5대와 지문인식기 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법·부당 내역]

1. 지역개발공채 발급 등 세출업무 소홀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 및 별표 1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등과 1,000천원 이상의 공사도급, 용역계약(2.5%)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1.5%)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공채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북이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6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개발공채를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표 2】 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인감 등 계약관련 서류 및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등 지출 관련 서류를 미징구한 사실이 있다.

【표1】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원)

년 도	계약일자	계약금액 (공급가액)	계약자	공채액		
				정당액	소화액	비고
2016년	2016.01.25	2,337 (2,124)	(주)●○◇◆□■	50	0	증 50

【표 2】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원)

년 도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자	지적내용
2014년	2014년 면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2014.01.28	1,710	(주)●○◇◆□■	계약 및 지출 증빙서류 미비
2015년	청사무인경비시스템 (◆●○) 추가 계약	205.05.07	440	(주)◇◆●	"

2.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관리 소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같은 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제한)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북이면에서는 청사 출입을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지문인식을 위해 2013년 ~ 2016년까지 공무원의 지문과 주민등록을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또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열람하는 용역으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용역 계약시에는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가직원의 보안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하고, 수행단계에서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토록 하며, 비밀유지의 준수 의무 및 위반할 경우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종료단계에서는 용역사업 관련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보안확약서를 작성·제출토록 해야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면에서는 2014년 ~ 2016년까지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용역수행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처분지시]

- ① 2016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계약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50천원을 추징 하시기 바랍니다.
- ②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절차 등을 이행하여 주시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